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6. 9.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5. 9. 5. 오세희의원 등 17인

나. 회부일자: 2025. 9. 8.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7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 11. 17.)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435회 국회(임시회)

제1차 중소기업소위원회(2026. 5. 20.) 상정, 축조심사, 의결(수정가
결)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 5. 20.) 상정, 소위심사보
고, 찬반토론, 의결(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오세희의원)

현행법은 정부가 소상공인의 보호와 자주적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해외직구 급증과 글로벌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국내 시장 진출 확대 등으로 가격·배송·마케팅 분야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국내 소상공인의 경영여건이 악화되고 있음. 특히, 일정 금액 이하 해외 물품에 대한 관세 및 부가가치세 면제로 저가 상품이 국내로 대량 유입되어 동일·유사 품목을 생산하는 소상공인의 매출 감소 우려가 커지고 있음.

이에 정부가 전자상거래 확산 등 국내외 경제환경의 변화에 따라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 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성소미)

현행법은 정부가 소상공인의 보호와 자주적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소상공인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3장(소상공인 지원 및 육성 시책)과 제4장(소상공인 보호 시책)에서 다양한 소상공

인시책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소상공인 실태조사¹⁾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전자상거래 매출실적이 있는 소상공인 비율은 12.9%로, 최근 3년간 소폭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한편, 전체 매출에서 전자상거래 매출실적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3년 기준 71.3%로 나타났는바, 전자상거래가 소상공인의 매출에 미치는 영향은 작지 않은 반면, 여전히 많은 소상공인이 전자상거래를 통한 매출 증대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임.

참고로, 경남지역 자영업 부진의 구조적 요인에 관한 연구²⁾에 따르면, 경남지역 거주자의 전자상거래 소비 활성화로 인해 지역 내 자영업자의 경쟁범위가 확대되는 결과로 이어진 반면, 전자상거래 활용도는 전국 평균보다 저조한 상황임.

동 연구는 이러한 상황이 전자상거래를 통한 소비유출이 증가하고 소비유입은 제약되는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하여 지역의 소비순유출 지속 및 자영업자의 경영상황 악화로 이어진다고 분석하였는바, 전자상거래 확산과 같은 경제환경의 변화가 소상공인의 경영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한 정책의 수립·시행 필요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보여짐.

개정안에서 의도하고 있는 바와 같이, 정부가 전자상거래 확산이나 AI(인공지능) 기술 발전, 기후위기 대응에 따른 에너지 전환 등 국내

1)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023년 기준 소상공인 실태조사’, 2025.6.

2) 한국은행 경남본부, “경남지역 자영업 부진의 구조적 요인 및 시사점”, 2025.1.

외 경제환경의 변화에 발맞춰 소상공인시책을 적극적으로 수립·시행한다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지속적인 성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바,

정책환경의 변화에 따른 국가 등의 시책 수립·시행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입법례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³⁾, 「지속가능발전기본법」⁴⁾, 「해사안전법」⁵⁾ 등을 참고할 필요가 있어 보임.

중소벤처기업부는 국내외 경제환경 변화에 따른 소상공인시책의 수립·시행 필요성에 동의한다는 입장임. 다만, 유사·중복 조항 신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소상공인시책의 수립·시행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 제3조제1항⁶⁾에 개정안의 내용을 반영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음.

3)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8조(경제와 산업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경제·산업구조 및 노동환경의 변화에 부응하는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4)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제25조(생태·환경 및 기후위기 대응)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물의 혜택을 고루 누릴 수 있도록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물 부족, 수질악화 및 수생태계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5) 「해사안전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양사고를 예방하고 해상교통환경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양시설의 관리, 해상교통망의 구축 및 관리, 해상교통 관련 신기술의 개발·기반조성 지원, 해사 사이버안전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6) 「소상공인기본법」

제3조(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정부는 소상공인의 보호와 자주적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소상공인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 김원이 위원)

법 개정에 따른 중복 규정을 정비하고, 기존 법률 조문과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의결함(안 제3조제2항 삭제 등).

6. 심사결과

수정가결

7.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내용

체계·자구심사를 거쳤음(수정의결).

※ 심사보고서 붙임서류

1.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2.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6. 5. .

제 안 자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

개정안은 전자상거래 확산 등 국내외 경제 환경의 변화에 따라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소상공인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기존 법률 조문과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체계 및 일부 자구를 수정함(안 제3조).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조제1항 중 “보호와 자주적 육성을 위한”을 “보호와 자주적 육성을 위해 전자상거래 확산을 포함한 국내외 경제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한다.

수정안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3조(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정부는 소상공인의 보호와 자주적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소상공인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현행과 같음)	제3조(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 <u>보호와 자주적 육성을 위해 전자상거래 확산을 포함한 국내외 경제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u> ----- ----- ----- -.
<신설>	② 정부는 전자상거래 확산 등 국내외 경제환경의 변화에 따라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소상공인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삭제>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	③ ----- 제1항 및 제2항---	② ----- 제1항-----

공인시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 을 고려하여 그 지 역의 소상공인시책 을 수립·시행하여 야 한다. ③·④ (생략)	----- ----- ----- ----- ----- -----. ④·⑤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	----- ----- ----- ----- ----- -----. ③·④ (개정안 제4 항 및 제5항과 같 음)
--	---	--

법률 제 호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보호와 자주적 육성을 위한”을 “보호와 자주적 육성을 위하여 전자상거래 확산 등 국내·외 경제환경의 변화를 고려한”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정부는 소상공인의 <u>보호와 자주적 육성을 위한</u> 종합적인 소상공인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 <u>보호와 자주적 육성을 위하여 전자상거래 확산 등 국내·외 경제환경의 변화를 고려한</u> ----- ----- -----.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